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법규>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7. 21.>
- ② 삭제 <2008. 12. 26.>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7. 21.>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 ✓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 ✓ 제62조(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0.>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요령은 별표 4와 같다.
- ✓ ③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 ✓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시 조치사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② 삭제 <2012. 2. 22.>

③ 시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⑥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위탁수수료를 규정하는 법률 내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15.>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⑤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
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15., 2017. 6. 9.>